

2024년 7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홍태	7/7	[일요와이드]외환시장 거래 새벽 2시로 연장...간이과세 금액 상향	
박세진	7/14	[뉴스1번지]장마철 고속도로 조심하세요...'빗길 치사율' 4배 [뉴스현장]김여정, '尹 탄핵청원 100만명' 언급..."집권위기에 비상탈출 시도"	
안지연	7/21	[뉴스센터]정부, 김여정 '포 사격 맹비난'에 "매우 유감" [일요와이드]유튜브 인상에도...'정보 공개·가격 인상 제한' 법 없어	
임윤주	7/28	[뉴스투데이]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년...사건 처리 개선 목소리 [뉴스리뷰]동성부부 법적권리 대법서 인정...합법화 논의 관심 [뉴스15]동성부부 법적 권리 첫 발...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변호사 (법무법인 대운)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24.8월 마지막 방송예정 (강의)
신규	최미연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전임연구원	2024.07.25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7/7(일)	김홍태	지난달 30일 뉴스1번지에서는 장마철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전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실제 빗길에서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5일 새벽, 충북 충주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4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면	기습 폭우가 내리는 장마철을 맞아 연합뉴스TV에서 빗길이나 침수 지역 운전 대비 요령에 대해 각종 리포트 등을 통해 보도해오고 있습니다. 빗길 사고 확률, 빗길 운전 시 주의 요령 등을 소개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과 사고 유형, 사고 대처법을 자세히 설명

	<p>서,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량이 풀썩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강정모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사고조사 차장은 급차로 변경,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차량 미끄러짐이나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브레이크 페달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꼼꼼한 차량 점검도 필요한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여부 확인이 중요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동전 절반 이상이 보여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빗길에선 시야 확보도 어렵지만, 뒤쪽에서 오는 차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빗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수칙과 치사율의 통계치를 제시하고 제동거리를 설명하면서, 여름철 빗길 자동차 운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짚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한다면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과 사고 유형을 약간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내용과 구비할 물품 등도 안내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또한 만약 빗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한 번 더 차량 점검을 하고, 빗길 운전시의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자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p>	<p>하면 사고 예방 등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보도 시 해당 내용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4	박세진	연합뉴스TV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인력수해군의 부사관 후보생 선

7/14(일)	<p>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내년 3월 임관하는 해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석 현황만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군 부사관 선발률이 3년 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이번 필기시험을 폐지한 이유가 "열악한 인력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해군 관계자의 설명을 함께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군 간부 총원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조치가 그동안 추진해온 군의 초급간부 모집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해군의 발표를 중심으로 단신 보도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군 관계자 발언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필기시험의 폐지가 해군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장비와 기술 중심의 군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해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필수 인력이 총원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군의 허리를 맡고 있는 초급간부의 질적 저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해군 조치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해 평가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p>	<p>발 필기시험 폐지는 기사에 적은 것처럼 지원자가 모자란 현실에서 인력 수급을 위한 교육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따지면 기준 완화 자체가 당연히 해군의 질적 향상에 플러스가 되는 조치는 아니지만, 문턱을 다소 낮춰서라도 부사관 인력을 채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사관 질적 저하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명심하고, 해군의 대책과 보완 방안 등을 비판적으로 접근해 취재하겠습니다.</p>
---------	--	--

2024 7/21(일)	안지연	<p>물가 상승과 함께 지난 해 말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료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가입자들은 콘텐츠 이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도, 사업자들은 구독료 인상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이 없어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안 추진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법안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안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나 설명이 없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해 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플랫폼 사업자나 법적 전문가 등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독료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보다 데이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면 보도에서 주장한 법적,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한다면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넷플릭스 등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이들 플랫폼이 구독료 인상으로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타국의 규제 사례 등을 언급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위 원님의 지적처럼 이틀 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추진했는지, 구독료 인상에 대한 사업자와 전문가의 인터뷰, 구독료 인상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제시가 있었다면 훨씬 더 시청자들의 이해가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해당 내용을 추후 보도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2024 7/28(일)	임윤주	<p>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선 당사자들</p>	<p>경려와 지적 감사합니다. 흔히 기자들이 기사에 힘을 실어주려고 소수이든 다수이든 해당 이슈와 논쟁에 대해 특정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부각</p>

	<p>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23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규모가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 반면, “종전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5명의 반대 의견과 “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명의 별개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보도는, 일각에선 ‘양육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에 대한 이번 판례를, 지난 판례와 비교하며 설명해 차이점을 전달하면서, 이번 판례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전하며, 해당 판결의 취지도 명확하게 전하는 한편,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다루어, 해당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말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지적되어온 명확하지 않은 주체에 대한 표현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p>	<p>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정 집단의 성명이나 입장 표명, 여론조사 등이 없는 상황에서 흔히들 일각이란 용어를 넣어 긍정 또는 부정, 우려 내지 찬성 의견을 적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도 그 차원에서 ‘일각’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기사에선 주체가 나오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그 의견을 내는 혹은 낼 수 있는 집단의 대표 또는 구성원을 인터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취재 기자들에게 숙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p>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7. 07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58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달 30일 뉴스1번지에서는 장마철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전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빗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 27일 뉴스리뷰에서는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에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0일 뉴스13에서는 빗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이 판단을 전했습니다. 지난 주 첫 소식은 지난달 30일 일요와이드인데요,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되고, 간이 과세 기준 금액이 1억 400만원까지로 상향되며,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플랫폼도 출시됐다고 전했는데요, 하반기 경제분야 달라지는 것을 기자가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가 외환시장 개장시간인데요, 7월부터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고 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야간 시간대 미국 주식·채권을 살 때도 임시환율이 아닌 실시간 시장 환율에 따라 환전할 수 있다면서, 국내 소재하지 않는 외국 금융기관도 정부 인가를 받으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도 7월부터 상향되는데요,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올린다고 하며, 다만 부동산 임대와 유흥업소는 종전처럼 4,800만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금융 상품플랫폼 '잇다'도 출시가 됐다는데요, 서민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조회하고 대출과 상담, 사후 관리까지 앱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게 하여 이용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다양한 서민 금융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7월부터 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우울증 선별 검사에서 10점 이상 받은 사람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8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저감 방안도 나왔는데요, 아파트 바닥 두께를 법적기준인 250mm보다 두껍게 시공하면,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촌 빈집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주에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있는 빈집은 철거나 수리 명령을 내리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씩 1년에 2회 부과할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는 7월부터 하반기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 중, 중요한 내용을 기자가 잘 정리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의 경우는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와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떤 이점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간이 과세 기준금액 상향의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잇다' 앱의 출시도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반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의 사용 방법과 사용하는 경우의 혜택 등에 대해선 추후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저감 방안과 농촌 빈집 철거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해당 정책들이 현재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각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에 따른 투자자 교육도 필요해 보이고

요, '잇다' 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등도 조금 더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었음 좋았을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뉴스1번지에서는 장마철 극심한 호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운전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실제 빗길에서 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4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늘리고 타이어 상태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5일 새벽, 충북 충주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합차가 미끄러져 40대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면, 앞부분이 찌그러진 차량이 풀숲을 덮쳤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3년간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만 7,563건 가운데 38.5%가 여름철에 발생했는데요, 100건당 사망자를 따지는 치사율을 보면 비오는 고속도로의 경우 7.88명으로 모든 도로 빗길사고 치사율 2.0보다 4배 가량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가운데 비 올 때와 맑을 때를 비교하면 비오는 날 치사율이 2배 가량 높았는데요, 많은 비가 예보된 올해 여름, 빗길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속도를 평소 대비 20% 이상 줄이고 안전거리는 2배 가량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젖은 도로에선 제동거리가 최대 1.8배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강릉도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사고조사차장은 급차로 변경, 급브레이크 등의 조작은 차량 미끄러짐이나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 브레이크 페달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꼼꼼한 차량 점검도 필요한데,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여부 확인이 중요하고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홈에 끼웠을 때 동전 절반 이상이 보여야 안전하다고 합니다. 전조등과 후미등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빗길에선 시야 확보도 어렵지만, 뒤쪽에서 오는 차들이 자신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빗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수칙과 치사율의 통계치를 제시하고 제동거리를 설명하면서, 여름철 빗길 자동차 운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을 잘 짚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강한다면 빗길 사고의 주요 원인과 사고 유형을 약간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 그리고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 사전에 준비할 내용과 구비할 물품 등도 안내할 필요도 있었습니. 또한 만약 빗길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 한 번 더 차량 점검을 하고, 빗길 운전 시의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하자는 마무리 멘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 지난 달 27일 뉴스리뷰에서는 부모처럼 가까운 친족 간에 벌어진 재산 범죄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에 따라 형벌이 면제되는데요, 박수홍, 박세리 씨의 가족 간 재산 분쟁 사례로 관심을 받은 법 조항이라면서, 현재가 71년 만에 이 법의 일부를 고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채무 문제 탓에 갈등을 빚어왔으며 아버지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전 프로골퍼 박세리 씨부터, 동생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까지 이들 사례에서 오르내리는 단어는 바로 '친족상도례'인데요, 친족 간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란 뜻입니. 이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1항은 부모, 자식 같은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 가족처럼 가까운 친족 간 일어난 재산상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서, 고소해봤자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입니. 지적장애인인 가족이 한평생 모은 퇴직금과 상속 재산을 가로챈 숙부와 숙모 사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예 당사자는 법원 판단조차 받아볼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현재가 이 법 조항이 생긴 지 71년 만에,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특례 필요성은 수긍하더라도 실제 가족 간 어떤 유대가 있는지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피해자가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질병, 장애 등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불러올 염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는 가족 구성원이 각자 경제활동을 하며 재산을 공동소유 한다는 개념이 희박해진 요즘 시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즉시 중지했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한편 현재는 사촌 등 직계혈족 이외의 친족이 저지른 재산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 형법 328조 2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기에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를 제외하고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최고죄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는 조항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하여 더 이상 적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의 역사적 배경 등을 본다면 이번 결정은 역사적으로 농경 사회 가부장 중심의 가족 문화가 핵가족이나 개인 중심으로 바뀐 시대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 방송 내용대로 공동소유의 개념이 희박해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기도 하고 적용을 중지하기도 하는 결정 유형을 말합니다. 따라서 보통 법개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 부분 입법을 위해 법 개정의 방향성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해 보이는데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중요해 보이고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을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달 30일 뉴스13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빛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전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건데요,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며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할 때 퇴직급여에 대한 분할이 많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내용에서는 퇴직연금 분할의 법적 기준이나, 이 판결이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간단히 언급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실제 이 사례에서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하여도 채무가 더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7. 14 방송) : <바로보는 TV 올부즈맨 65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우리 군이 이달 초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포병 실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로 해당 지역이 지상적대행위 금지 구역으로 묶이면서 훈련이 중단된지 6년 만으로 군은 이번 포사격 재개가 대북 군사대응능력을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내놨는데,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데

대해 지난 9일, 북한의 김여정이 비난 담화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이 해상에 이어 지상에서도 접경지역 포사격 훈련을 재개한 것은 "자살적인 객기"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행동을 감행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헌법이 무장력에 부여한 사명과 임무가 지체없이 수행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참여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집권 위기 탈출을 위해 '안보 불안'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자는 김여정의 담화가 남북관계 악화와 정세 긴장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선동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국가 원수를 비난하는 등 우리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 사회의 국론 분열을 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우리 군이 관할 구역 내에서 정상적인 사격훈련을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앞으로도 계획에 의해서 시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의 발언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시청자들이 안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화의 내용을 분석해 그 의도를 평가해 봄으로써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 전체 분량의 3분의 1가량을 할애해 현재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김여정의 담화가 윤석열 정부의 공세적인 대북정책 추진을 약화시키고, 대남 추가 도발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의도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접경지역 무력 도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7차 핵실험 등 북한이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후속 보도가 이어진다면 시청자들의 사안에 대한 이해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그 후속조치로 북한군 장교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러시아에 파견되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강화되자 중국은 견제 목적으로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전원을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9일, 북한 매체를 인용해 김일성북한종합대학 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에 나섰다고 전하며, 지난날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 북한군 고위급 인사가 러시아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개적인 북러 군사협력 행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중국 당국이 중국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 전원을 귀국시킬 것을 북한에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소

식을 전하며,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군사적 동맹 관계를 복원한 북러 간 밀착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러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하는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가 시의적절한 보도를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소식을 잘 전달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러시아와 중국 간 변화된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보는 후속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초급간부 인력 수급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해 지원률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군의 허리로 불리는 초급 장교와 부사관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군은 간부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6일 보도에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군이 내년 3월 임관하는 해군 부사관 후보생 선발부터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고등학교 성적과 출석 현황만을 평가해 선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군 부사관 선발률이 3년 전부터 감소하는 추세라고 덧붙이며, 이번 필기시험을 폐지한 이유가 "열악한 인력 획득 환경에서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해군 관계자의 설명을 함께 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군 간부 충원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번 조치가 그동안 추진해온 군의 초급간부 모집 정책과 방향성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연합뉴스TV가 해군의 발표를 중심으로 단신 보도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해군 관계자 발언의 정확성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이 없었던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구체적으로 해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해군에 적합한 부사관 선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필기시험의 폐지가 해군에 적합한 인재 선발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군이 장비와 기술 중심의 군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해군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필수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군의 허리를 맡고 있는 초급간부의 질적 저하 문제는 장기적으로 군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번 해군 조치의 장단점을 모두 분석해 평가해보는 보도가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경찰청이 읍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7월과 8월, 두달간 매주 금요일, 경찰청 주관으로 단속이 시행되며, 각 시도경찰청은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 및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뉴스TV가 읍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한 만취 경찰관이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단독 보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읍주운전 특별단속을 시작한 첫 주말, 경남경찰청 소속 20대 A경장이 읍주단속을 무시한 채 차량을 운전해 도주했습니다. A경장은 단속 경찰이 추격하자 도로에 차를 버리고 공원으로 도망가다 붙잡혔고, 담당 경찰에게 한번만 빠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찰은 A경장을 즉시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인 신분인 경찰관이, 대대

적인 읍주단속 시행기간에 읍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거 현장 영상을 활용해 생동감 있게 화면을 구성하였고, 사건의 경위와 경찰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됩니다. 향후 경찰의 후속 조치에 대한 보도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연합뉴스TV가 경찰 근무기강 확립과 휴가철 읍주운전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7. 21 방송) : <바로보는 TV 읍부즈맨 66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물가 상승과 함께 지난 해 말부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구독료 인상이 이어졌습니다. 가입자들은 콘텐츠 이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사업자들은 구독료 인상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를 규제하는 관련 법이 없어 가입자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월 정액 구독료로 지출되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말 구글은 우수한 서비스와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43% 인상했지만, 향상된 변화를 체감했다는 의견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독료가 저렴한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이용하는 디지털 망명까지 등장했는데, 다른 플랫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는 이에 대한 법적 접근의 필요성도 시사했습니다. 저렴한 이용료를 빌미로 이용자들을 유인했지만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수수료를 올리는 경향을 보여 이를 규제할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망사용료법, AI기본법 등 정보통신 분야 갈등을 중재한 법안들이 폐기되거나 추진이 연기되는 상황에 놓여있어 우리 나라도 관련 법안 준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보도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독료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의 이유로 구독료를 인상했지만 이에 대한 사업자의 충분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자들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접속한 것처럼 사용하는 디지털 망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규제가 필요한 상황인지에 대해 보도를 통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법안 추진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련 법안 준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법안 추진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나 설명이 없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또한,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의 의견을

인용해 법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나 법적 전문가 등의 의견이 덧붙여졌다면 현재 상황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구독료 인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보다 데이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면 보도에서 주장한 법적,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이를 둘러싼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도한다면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근로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되면서 관련 내용을 다룬 보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행 5주년이 된 현재, 이 법의 효과와 한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15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자체 해결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매년 늘어 약 4만 건이 접수되어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가 더디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지침은 25일 안에 사건을 처리해야 하고 신고인 동의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감독관이 임의로 연장하거나 신고자가 제기한 별도 구제신청 결과를 확인한다며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신고된 사건들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노무사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등 통해 이 법의 성과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율이 감소했지만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이 보도는 법적 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한계점을 강조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사가 모두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화면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보였습니다. 보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결과 현황을 그래프로 제시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는데요, 신고된 사건의 성격과 처리 결과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추가해 제시했다면 이 법안이 지닌 문제점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 있게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 이내의 짧은 영상인 숏폼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음악과 드라마, 제품 등이 숏폼을 통해 소개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콘텐츠가 소비되다 보니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뉴스리뷰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서는 미국 유명 가수가 틱톡에 업로드한 매운 뷔뽀라면 영상이 전 세계에서 조회수 4,000만 회를 기록해 한국 제품을 널리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제품의 품귀현상과 함께 제조업체의 주가는 지난

달에 올 초 대비 203.6% 폭등하는 등 숏폼이 한류의 확산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숏폼 플랫폼이 한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 플랫폼 흐름에서 K콘텐츠가 적합하다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숏폼은 짧은 영상 특성상 자극적인 경우가 많고, 저작권 분쟁 논란도 지속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숏폼 영상은 한류 콘텐츠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숏폼은 전통 미디어와는 달리 짧은 시간에 이용자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국가와 문화권에서 국내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에 콘텐츠의 경쟁력과 경제적 성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 유명 가수가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 숏폼이 한류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콘텐츠가 지닌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숏폼과 한류 콘텐츠의 관계를 전문가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자극적인 콘텐츠, 저작권 분쟁 등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분쟁과 자극적 콘텐츠의 확산으로 인한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집니다. 어떤 정책적 접근이 가능한지 전문가들의 분석과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도를 접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지하와 지하차도 등 지하 공간에 대한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호우로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집중 호우가 내릴 때 지하 공간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서는 물막이판 설치와 입구 쪽에 모래주머니를 쌓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하 공간은 생각보다 물이 빨리 들어올 수 있어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올 경우 즉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빗물이 빠르게 차기 때문에 더 위험하며 운동화 이외의 신발은 벗고 맨발로 탈출하는 것이 좋고 차량은 둔 채 사람만 신속히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해서는 안되지만 이미 들어선 경우라면 창문을 내리고 운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차에서 탈출한 후에는 물이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고 벽에 설치된 비상사다리를 이용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는 집중 호우가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짚어봤습니다.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지하 공간은 물에 노출이 되기 쉽기 때문에 물막이판 설치와 모래주머니 사용, 적절한 대피 방법 등을 제시해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장마철을 맞아 시의성 있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지하 공간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여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하 공간의 안전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의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졌다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7. 28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6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얼마 전 동성 동반자를 인정하는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뉴스리뷰>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한 동성 부부가 4년 전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였으나,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해당 부부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공단 측을, 2심은 해당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엇갈렸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게 되어, 3개월 심리 끝에,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실혼 배우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해 왔으면서, 동성이란 이유로 이들을 차별하는 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부나마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었습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제 생계를 의존하는지, 경제적 생활공동체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민법 내지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할지는 다른 국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유보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동성 배우자' 대신,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까지도 나아갈지 치열한 논쟁도 예고된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한 사건의 실제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1심과 2심, 그리고 현재 대법원 판결이 난 과정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배경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한편, '동성 배우자'가 아닌 '동성 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동성혼에 대한 논의는 유보하였다는 부분도 제대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기자가 보도 말미에 덧붙인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예고된다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져, 사안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합뉴스TV에서는,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 가능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뉴스15>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동성 부부가 일부나마 법적 권리를 보장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동성 동반자의 법률상 부부 자격을 인정하는 논의의 첫발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는 변호사 인터뷰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39개 국가가, 아시아에서는 대만, 네팔, 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였다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시스템 안에서 동성 결합을 인정한 첫 사례일뿐, 동성 부부의 사실혼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된 건 아닙니다. 결국 동성혼 합법화는 민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센 만큼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혼인 제도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는 '사실혼 배우자'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성 부부를 대상으로 확대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서 지적하였듯, 동성혼 합법화 논의는 논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첨예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논쟁적인 이슈를 보도할 때에는 엇갈리는 입장을 전달하며 차이를 보여 주곤 하는데요. 본 보도에서도 시민사회단체와 기독교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취지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사실상 취재원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민사회단체인지, 어떤 기독교계 인물이나 단체가, 어떤 내용의 우려를 제기하였는지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마지막 부분의 지적 역시, 사실상 지적을 제기한 주체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을 전하기 위해 취재한 노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 판례 변경에 대해 보도한 <뉴스 투나잇>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받지 못한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2011년 대법원 판례에선 당사자들 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등 구체적인 청구권이 생기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후 23년이 지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인이 돼 양육 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 규모가 확정돼, 완전한 재산권의 성질을 갖게 된다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소멸시효 기간을 정했습니다. 반면, "종전 판례가 타당해 유지해야 한다"는 5명의 반대의견과 "소멸시효의 시작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1명의 별개 의견도 존재했습니다. 보도는, 일각에선 '양육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본 보도는 양육비 청구 유효 기간에 대한 이번 판례를, 지난 판례와 비교하며 설명해 차이점을 전달하면서, 이번 판례의 중요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의 말을 직접 전하며, 해당 판결의 취지도 명확하게 전하는 한편, 반대 의견과 별개 의견에 대해서도 다

루어, 해당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보도 말미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내용은, 꾸준히 지적되어온 명확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표현으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금융 범죄에 대해 보도한 <뉴스위치>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온라인 카드깡'을 홍보하는 업체 홈페이지를 보여주며 이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온라인 카드깡이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는 척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카드 한도 내에서 시중보다 훨씬 산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전화를 받고, 카드깡 업체에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 준 사례도 전했는데요, 업체는 2,80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한 뒤, 이 중 70%를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는 할부가 끝나면 주겠다고 했지만, 6개월 뒤 종적을 감췄습니다.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겨냥해 이 같은 카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100만~300만 원 사이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급전 목적의 생계형 카드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로또 번호 예측 등을 빌미로 고액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하는 수법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투자를 권유받으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범죄 보도의 경우, 피해자 보호나 모방 범죄 방지 등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련 기관의 건물을 비추거나, 경우에 따라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화면이 제공되기도 하는데요. 본 보도는 잘 정리된 기사 내용에 맞게, 자료 화면도 매우 적절하게 배치되었습니다. 실제 카드깡 홍보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사례 설명도 그림을 통해 전달했으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사이트도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취약계층을 겨냥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정보에도 취약할 수 있는데, 범죄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뿐 아니라, 비슷한 범죄 유형도 덧붙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 학교 폭력 분석 결과에 대해 보도한 <뉴스03> 살펴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시내 학교폭력 분석 결과, 성범죄 신고와 검거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지역 학교폭력 중 성범죄 신고는 지난해보다 증가하였고, 검거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5.2% 늘어났습니다. 한편 14~18세 청소년 범죄의 경우 도박과 마약 범죄가 전년 대비 각각 228%, 59.1%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 보도의 경우 단신 보도이긴 했지만, 자료화면으로 서울 경찰청의 모습만 제공되었는데요. 통계 수치를 보여주는 만큼 그래프를 활용하는 등의 자료화면이 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 등의 한계로 불가능했다면, 최소한 자막으로 수치를 제공하였다면, 보도의 전달력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7월 7일 04시/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7월 14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7월 21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7월 28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